

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진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-198
----------	-------

발의년월일 : 2023. 5. 23.

발의자 : 이진분 의원 외 10명

1. 개정이유

- 개정된 상위 법령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운영비의 지원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- 「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」 개정사항을 반영함(안 제5조)
-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5조의6)

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복임1

- | | |
|------------|---------|
| 4. 현행조례안 | : 복임2 |
| 5. 관계법령발췌서 | : 복임3 |
| 6. 예산수반사항 | : 복임4 |
| 7. 입법예고결과 | : 의견 없음 |

- 입법예고 : 2023. 5. 16. ~ 2023. 5. 22.

- | | |
|-----------|-------|
| 8. 부서검토의견 | : 복임5 |
|-----------|-------|

【붙임1】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

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16조제3항” 을 “법 제16조제2항” 으로, “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” 를 “다음 각 호의 사항을” 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 중 “희생하였거나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” 를 “희생·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” 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호 중 “재향군인회 회원의” 를 “회원” 으로, “재향군인회 업무에 대한” 을 “향군 업무에 대한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.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속		안산시의회
입 안 자	시 의 원	이진분 의원 대표발의 (행정 2503)

신·구 조문 대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보조금의 지원) 시장은 법 <u>제16조제3항에</u> 따라 <u>재향군인회</u> <u>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</u> <u>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<u>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국가를 위하여 <u>희생하였거나</u> <u>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하거나</u> <u>기념하는 사업</u></p> <p>2. <u>재향군인회 회원의 안보의식</u> <u>및 재향군인회업무에 대한 교육</u> <u>사업</u></p> <p>3. ~ 5. (생략) <신설></p> <p>7. (생략)</p>	<p>제5조(보조금의 지원) 시장은 법 <u>제16조제2항에</u> 따라 <u>다음 각 호</u> <u>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</u> <u>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국가를 위하여 <u>희생·공헌한 회</u> <u>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</u></p> <p>2. <u>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에</u> <u>대한 교육사업</u></p> <p>3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6. <u>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</u> <u>비]</u></p> <p>7. (현행 6호와 같음)</p>